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

We Finance Global Korea



중소중견기업 금융상품

- 1 | 금융상품 개요
- 2 | 주요 금융상품별 지원조건
 - 수출촉진자금대출
 - 수출성장자금대출
 - 수출이행자금대출
 - 수입자금대출
 - 해외투자자금대출
 -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 이행성보증
 - 해외온렌딩



수출관련대출

국내 수출자

- ✓ 수출촉진자금
 - 해외시장개척
 - R&D, 시설자금 등
- ✓ 수출성장자금
 - 중소기업 전용
- ✓ 수출이행자금
 - 제작자금 등

해외판매업

- ✓ 수출기반자금
 - Project Finance
 - Structured Finance

수입관련대출

- ✓ 수입자금
- ✓ 수입기반자금

해외사업관련대출

- ✓ 현지법인사업자금
- ✓ 해외투자자금
- ✓ 해외사업자금
-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간접대출

- ✓ 해외온렌딩
- ✓ 전대금융
- ✓ 무역어음재할인 등

보증

- ✓ 채무보증
 - 수출금융보증
 - 수입금융보증
 - 해외사업금융보증
- ✓ 이행성보증
 -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등

외국환

- ✓ 포페이팅
- ✓ 수출팩토링 등

투자

- ✓ 채권인수 및 보증
- ✓ 지분출자
- ✓ 펀드투자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쏠단계에 걸친 맞춤형 금융지원 수단 보유



수출입 관련 대출

수출촉진자금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
활동자금 및 수출기업 인수 등을 지원

수출성장자금

수출실적을 보유한 국내기업이 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과거 수출
실적 범위 내에서 지원

수출이행자금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생산 및 제작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수입자금

국가 경제 성장, 국민 생활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 지원

해외 사업 관련 대출

현지법인사업자금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

해외투자자금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해외사업자금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

해외사업활성화자금

국내기업, 해외자회사 등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관련 거래상대방 등 해외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01

수출촉진자금대출

개요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에 시설투자, 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 M&A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대상기업

수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 인수를 추진하는 국내기업,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기업

대출금액

실소요자금 90% 이내 (수출기업 지분인수하는 경우 실소요자금의 50% 이내)

대출기간

(시설투자) 15년 이내, (기술개발/수출기업 인수 등) 10년 이내, (그 외) 3년 이내



02

수출성장자금대출

개요

수출실적을 보유한 국내기업이 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

대상기업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대출금액

대출기간별로 대출기간에 상응하는 과거기간 수출실적의 일정비율로 산정

대출기간	중소/우대중견기업*	중견기업
6개월	90% 이내	80% 이내
1년이상 3년이하	70% 이내	50% 이내

* 중견기업 中 중소기업 졸업(유예중소기업의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인 기업

대출기간

6개월 또는 1년이상 3년이하

03

수출이행자금대출

개요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 및 대금회수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
(제작자금 성격)

대상기업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 또는 생산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국내기업

대출금액

(수출계약금액 - 이미 수령한 금액) × 90% 이내

대출기간

최종 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내



04

수입자금대출

개요

국가 경제 성장, 국민 생활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대상품목

기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물품(사치품, 마약 등 소수 지원 금지 물품 제외)

대상기업

상기 대상품목을 수입하는 국내기업

대출금액

수입금액 또는 수입선급금액의 80% 이내(중소/우대중견/시설재 : 90%)

대출기간

2년 이내 (시설재 수입은 10년 이내)

지원방식

- ⊖ 회전한도 방식 : 과거 1년간 수입실적을 감안하여 회전한도 설정
 - ▶ 개별거래에 대하여 수입거래 확인만으로 간단히 대출집행
- ⊖ 개별대출 방식 : 기계류 등 시설재 수입, 수입규모가 큰 경우

05

해외투자자금대출

개요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대상기업

투자예정업종에 대해 사업경력 3년 이상인 국내기업

대상사업

해외시장개척/수출증대 효과 큰 사업, 자원개발사업, 첨단기술 개발·습득사업 등

자금용도

해외직접투자

대출금액

소요자금의 80% 이내
(중소중견기업·첨단기술습득 90% 이내, 자원개발사업 100% 이내)

대출기간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거치기간 가능)



06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개요

국내모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현지법인 앞으로 대출

대상기업

해외자회사(해외손회사, 해외증손회사 등 포함)

대상사업

해외시장개척/수출증대 효과 큰 사업, 자원개발사업, 첨단기술 개발·습득사업

대출금액

소요자금의 90% 이내

* 운영자금의 경우 현지법인 설립연수 등에 따라 현지법인 매출액의 40~70% 이내

대출기간

운영자금 3년 이내 / 그외 자금 30년 이내



07

이행성보증

개요

수출계약(해외건설공사, 선박 등) 등의 이행을 위해 사업주(발주자)가 요구하는 은행보증서를 발급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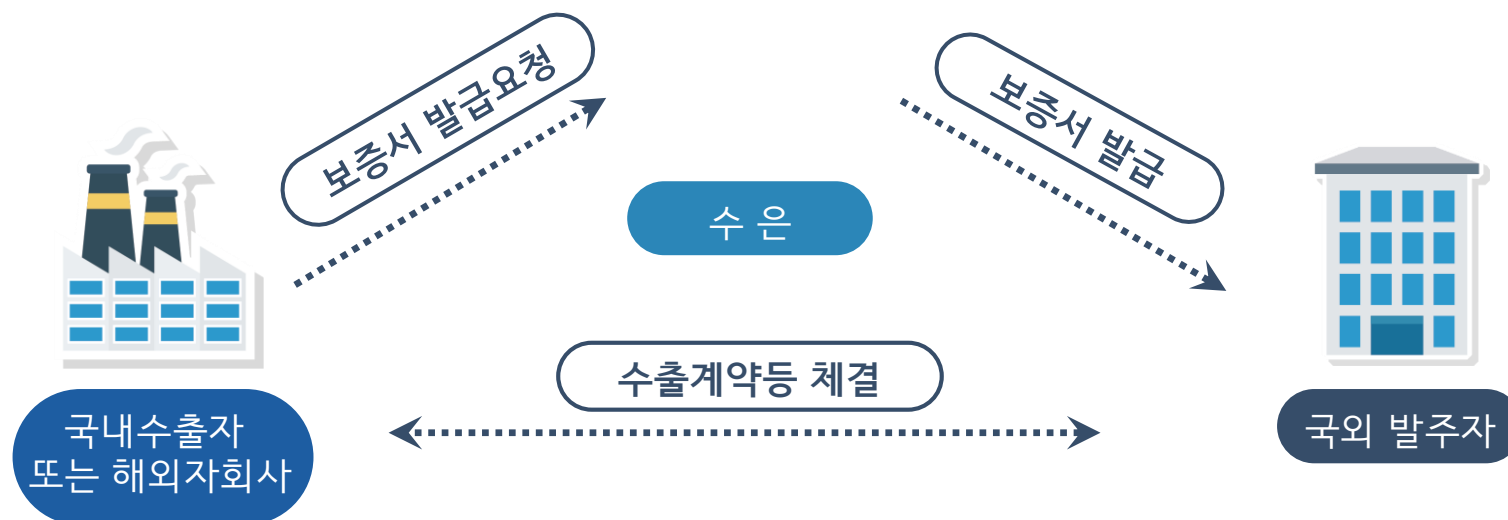
입찰보증(Bid Bond), 선수금환급보증(AP Bond),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하자보수보증(Warranty Bond) 등

대상기업 (보증의뢰인)

국내기업 또는 해외 자회사

보증금액

입찰안내서 또는 관련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금액 범위 내



08

해외온렌딩

개요

수은이 저리로 조달한 정책자금을 민간금융기관 지점망을 활용하여 수출입 중소중견기업 앞 공급하는 간접대출상품

대상기업

국내 중소중견기업 * 중견기업은 '건설·플랜트, 해양기자재, 혁신성장' 영위 기업에 한정

대출금액

- 수출촉진자금 : 자금용도(운영자금/시설자금) 및 수출실적에 따라 상이
- 수입자금 : 과거수입금액의 60% 이내(단, 수입예정금액은 90%까지 한도우대)
- 현지법인사업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

대출종류, 자금용도에 따라 1년~10년

대출기간



감사합니다.